

# 2026년 조선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2026. 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목 차

<b>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b> .....	<b>1</b>
1. 목표 및 기본방향 .....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3
<b>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b> .....	<b>5</b>
1. 재난 .....	5
① 자연재난 .....	5
② 사회재난 .....	11
2. 안전사고 .....	13
① 대학 안전사고 .....	13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	24
③ 연구실사고 .....	26
3. 감염병 확산 .....	28
① 감염병 재난 .....	28
4. 범죄 .....	32
① 일반범죄 .....	32
② 성범죄 .....	37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42
① 산업재해 .....	42
② 중대재해 .....	49
6. 기타 .....	55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	55

#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57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62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70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	76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	78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	79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 추진과제

1

####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 목적

### 내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 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

###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비상사태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 방침

##### 내용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총괄 재난안전부서 (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 수립 절차

##### 내용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건축안전환경팀]

### ① 학교 현황

#### □ 일반현황

학교명	조선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홈페이지	<a href="https://www.chosun.ac.kr/">https://www.chosun.ac.kr/</a>
전 화	062-230-7114	FAX	062-232-8834
총 장	김춘성	총괄안전 관리책임자	김춘성 (직책: 총장)

####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재학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17,911	956	283	104	19,254	-

※ 2025.4.1. 정보공시 재학생 층원 기준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재학생 기준)	현업업무종사자	기타	합계

※ 2025.4.1. 정보공시 기준

※ 현업업무종사자 중 도급, 용역인력 제외 - 2025.12.31.기준

####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2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총무관리처	총무팀/자산관리팀/기계전기팀/건축안전환경팀
재난	자연재난	건축안전환경팀	총무팀/자산관리팀/기계전기팀
	사회재난	건축안전환경팀	총무팀/자산관리팀/기계전기팀
안전사고	대학 안전사고	학생복지팀	총무팀/기계전기팀/건축안전환경팀
	교육시설 안전사고	건축안전환경팀	총무팀/자산관리팀/기계전기팀
	연구실 사고	기계전기팀	총무팀/자산관리팀/건축안전환경팀
감염병	감염병	보건팀	총무팀/학생복지팀
범죄	일반범죄	총무팀	건축안전환경팀
	성범죄	인권센터	학생복지팀/원스톱학생상담센터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축안전환경팀	총무팀/직원인사팀
	중대재해처벌법	건축안전환경팀	총무팀/직원인사팀
기타	비상사태	총무팀	자산관리팀/기계전기팀/건축안전환경팀

## 1.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자연재난[건축안전환경팀]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건축안전환경팀	팀장	문**	062-230-6250	주관부서
2	건축안전환경팀	팀원	조**	062-230-6253	
3	총무팀	팀장	김**	062-230-6211	협조부서
4	자산관리팀	팀장	김**	062-230-6222	
5	기계전기팀	팀장	박**	062-230-7590	

####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3	0	2	6	2.20
재산피해(백만원)	0	58	0	20	18.8	19.36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학년도 기준 피해복구 신청금액 및 공제비 지급 완료 건에 대하여 기입(사회재난 제외)

## □ 원인분석

### ○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여름철 태풍 및 장마와 겨울철 동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연도별 피해격차가 크게 나타나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축물 안전 관리 및 조치 필요

###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원인분석 작성사례

- (보행자 사망사고) 차량소통 중심의 법·제도 및 속도관리,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 등
  -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교차로,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보행자 사망사고는 충돌속도 50km/h부터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교통 선진국에 비해 도심속도(km/h)가 높음(한국 60~80, 스웨덴 40~60, 영국 48, 프랑스 50)
  - 일반국민 교통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17.11월, 교통안전공단)
    - 위험운전 경험률 : 졸음운전 71%, 난폭운전 70%, 신호위반 53%, 휴대폰 사용 73%
-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 보행자에 대한 배려·보호의식이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에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어린이 피해 증가
  -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 지정·정비는 미흡
    - \* '16년 노인보호구역은 1,107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16,355개소)의 7% 미만이며, 노인보호구역 정비율도 76%(838개소)에 불과
  - 어린이 보호 안전수칙 미준수\*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는 지속 발생
    - \* 서울신문 조사 결과(\* 17.11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30km/h)를 초과한 차량이 70%
- (화물차·사업용차량·이륜차 사고) 화물업계 과당경쟁으로 과속·과적·과로 경향이 있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면허관리 미흡 등
  -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면허취득기준으로 인한 운전미숙,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부족 등이 원인
- (지자체 관할도로 사고) 지자체 교통안전실태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인력·재정상 한계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관련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대학 내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대학 내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 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대응
- 대학 합동상황실 및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 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 사상자 대책

### - 부상자 치료 대책

- 보건진료소에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조선대학교병원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 구호활동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필요 시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관련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2~제33조의3) 관련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예정)	합계	
재난보험 가입 (재난, 화재, 가스 승강기 등)	93	94	120	307	
시설물 안전관리비	18	0	34.4	52.4	
<b>계</b>	<b>111</b>	<b>94</b>	<b>154.4</b>	<b>359.4</b>	

## 2 사회재난[건축안전환경팀]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건축안전환경팀	팀장	문**	062-230-6250	주관부서
2	건축안전환경팀	팀원	조**	062-230-6253	
3	총무팀	팀장	김**	062-230-6211	협조부서
4	자산관리팀	팀장	김**	062-230-6222	
5	기계전기팀	팀장	박**	062-230-7590	

##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1	0	1	2	0	0.80
재산피해(백만원)	49	0	322	60	0	86.2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b>계</b>	<b>0</b>	<b>0</b>	<b>0</b>	<b>0</b>	<b>0</b>

※ 학년도 기준 피해복구 신청금액 및 공제비 지급 완료 건에 대하여 기입(자연재난 제외)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및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관련 매뉴얼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관련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관련 매뉴얼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예정)	합계	
재난보험 가입 (재난, 화재, 가스 승강기 등)	93	94	120	307	
시설물 안전관리비	18	0	34.4	52.4	
<b>계</b>	<b>111</b>	<b>94</b>	<b>154.4</b>	<b>359.4</b>	

## 2. 안전사고

### ① 대학 안전사고[학생복지팀]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복지팀	박**	062-230-6102	주관부서
팀원	학생복지팀	최**	062-230-6103	
팀원	학생복지팀	조**	062-230-6104	
팀원	학생복지팀	김**	062-230-6105	
팀장	건축안전환경팀	문**	062-230-6250	협조부서
팀원	건축안전환경팀	선**	062-230-6258	
팀장	학사운영팀	박**	062-230-6060	
팀원	산학연구인재교육센터	강**	062-230-7972	
팀원	총무팀	김**	062-230-6311	

#### □ 위험요인

- 실습수업 안전사고: 실습수업 중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현장실습 안전사고: 학과 교육과정 중 외부 현장실습 기간 중 발생한 사고
- 학생 집단활동(연수) 안전사고: 대학 및 학생자치기구 등에서 주관하는 M.T, 체육 대회, 수련회, 비교과 체험활동 등 학생 집단활동 중 발생한 사고
- 교내 행사 안전사고: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일 행사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또는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
- 교내 교통 안전사고: 교내에서 교통상 발생하는 모든 사고(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등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7	13	20	15	4	12
재산피해(백만원)	7.1	9.5	17.3	14.5	4.8	10.6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7	13	20	15	25
	계	7	13	20	15	25

## □ 원인분석

### □ 원인분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청구 및 보상 내용 분석)

- 최근 5년 대학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대학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실습수업 및 학생 집단활동(연수)에서 발생하고 있음
  - (실습수업 안전사고) 실습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 부족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미흡(안전 수칙 미준수)
  - (학생 집단활동(연수) 안전사고) 학생활동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미숙지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코로나19 종식 이후 전면 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교내·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증가추세, 학생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 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세칙 마련 및 시행

-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통행 금지 또는 제한
-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운행 의무화(단과대학)
- 통행 속도 제한(20km/h)
- 안전거리 확보 의무
- 화재 및 전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 충전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물 입구 또는 출구 등 주차금지 장소 지정
- 안전교육을 통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 기타 안전 주의사항 안내
-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 단속반 구성·운영

○ 교내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규모 행사 시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총무관리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총무관리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총무관리처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부서 및 행사 승인부서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 학생 집단활동(연수) 안전

-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교내외에서 집단활동(연수)을 진행하는 경우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1)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 안전 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 ※ 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가입기관과의 계약 권장
  -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자제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검토
- \* 수련시설 안전정보: 학교안전정보센터(<http://www.schoolsafe.kr>)

### 2)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차량 보험증권 사본 및 차량보유 현황표
    - ※ 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행사 당일에는 배차된 차량이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조건으로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정원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적시
-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 차량 계약 시 해당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확인 및 음주측정 실시 요청(관할 지방경찰청 교통관련 부서)

### 3)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배상) 범위 등 확인
  - 기존에 대학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상(배상) 적용 범위\* 확인
  - 보상범위가 사고건당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참가학생 규모에 따라 보상(배상) 규모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원 대비 보상(배상) 규모 확인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검토
  - 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4) 행사 전(前) 답사

-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 확인
-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로, 인근 소방서, 병원, 지자체 등과의 연락 체계
-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교직원(시설담당자)의 참여로 시설안전 확인 강화

### 5)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실시
  - \* 음주(보건복지부), 성폭력(여성가족부)에 관한 각 부처 교육자료 이용
- 행사장 도착 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 ※ 숙소 및 행사장소 소화기 위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사전확인 및 교육

### 6) 교직원 동행 및 기타 확인사항

- 대학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이거나,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시 교직원이 동행
-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후, 숙박.버스 등의 계약에 대한 일정 연기, 취소 등 결정

## ○ 실습수업 및 현장실습 안전

- 실습수업 유형에 따른 사고 예방 관리

### 【 화학분야 】

-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 보관 장소 마련
- 폐액용기 운반용 기구 비치

- 폐약용기의 운반담당자 지정 및 운반 절차 등 수립

- 폐액용기 임시 저장소 마련

#### 【 가스분야 】

-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 옥외 설치 가스배관에 대한 부식여부 등 이상 여부 점검
- 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의 주기적 점검 실시
- 가스누출경보장치의 주기적인 검·교정 실시

#### 【 전기분야 】

-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 파악
- 실습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 금속제 외함 전기기 접지 실시
- 결함이 있는 전기설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 【 생물분야 】

- 생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법정 교육 이수
- 생물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감독
- 주변에 대한 정기 소독 등 감염방지 대책 시행
-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적절한 폐기 방법 수립

#### 【 기계분야 】

-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험 기계 목록 작성 유지 및 점검
- 방호장치 작동 여부 확인

#### 【 체육 및 기타 분야 】

- 수업 전후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 실시
- 학교 주변 전문병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확보 및 숙지

###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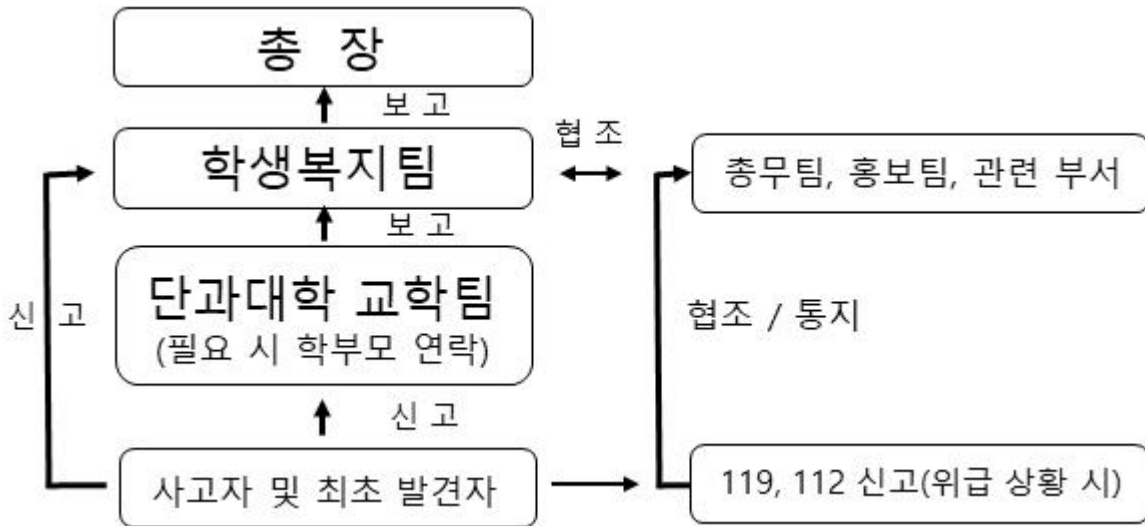
### ○ 기타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보고체계



###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부서장(학장)이 관리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요인 2.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 또는 과반된 행위의 심각성·피해규모	<b>극심</b> ▪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b>중대</b> ▪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계	경계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b>중간</b> ▪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계	경계	경계	경계	심각	심각	심각
	<b>경미</b> ▪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주의	주의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심각
	<b>사소</b> ▪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심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심각
	<b>없음</b> ▪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심각
	<b>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b>	없음	사소	경미	중간	중대	극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응급처치 또는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주변 지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손상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주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할 손상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손상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사고유형별 예방 및 조치 사항 ☜

○ 행사 및 학생 집단활동(연수) 등

구 분	행사유형	사고유형	예방 및 조치	담당부서
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빗고올보은제</li> <li>· E-Sports대회</li> <li>· 충장배 체육대회</li> <li>· 동아리 활동</li> </ul>	· 음주 후 옥외 취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 사전점검</li> <li>· 행사장(주변)순찰</li> <li>· 발견시 귀가 조치</li> </ul>	행사 주관부서
		· 행사중 안전사고 (타박상, 골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 사전점검</li> <li>· 구급약 비치</li> <li>· 사고발생시 응급조치</li> <li>· 119 구급대 후송</li> </ul>	행사 주관부서
		· 전기사고(감전, 합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 사전점검</li> <li>· 사고발생시 응급조치</li> <li>· 119 구급대 후송</li> </ul>	행사 주관부서
		· 화재(폭발)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 사전점검</li> <li>· 행사장 주변 소화기 비치</li> <li>· 행사장 순찰</li> <li>· 사고발생시 응급조치</li> <li>· 119 구급대 후송</li> </ul>	행사 주관부서
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MT</li> <li>· 각종 수련회</li> <li>· 졸업여행</li> <li>· 학술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 후 야외취침</li> <li>· 활동 중 상해 (타박상, 골절상)</li> <li>· 교통사고/추락사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li> <li>· 현장지도</li> <li>· 자체 순찰조 편성 및 활동</li> <li>· 구급약품 준비</li> <li>· 응급진료 기관 위치 파악</li> <li>· 사고 응급조치/119 구급대 후송</li> </ul>	행사 주관부서 지도교수/학과(부)장/학생대표 지도교수/학과(부)장/학생대표 행사 주관부서/학생대표 행사 주관부서/학생대표 행사 주관부서/학생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봉사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중 상해 (타박상, 골절상)</li> <li>· 교통사고/추락사고</li> <li>· 기타사고 (농기구 상해, 벌쏘임, 뱀물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li> <li>· 현장지도</li> <li>· 구급약품 준비</li> <li>· 응급진료 기관 위치 파악</li> <li>· 사고 응급조치/119 구급대 후송</li> </ul>	행사 주관부서/학생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 오리엔테이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 후 옥외 취침</li> <li>· 활동 중 상해 (타박상, 골절상)</li> <li>· 교통사고/추락사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li> <li>· 현장지도</li> <li>· 자체 순찰조 편성 및 활동</li> <li>· 구급약품 준비</li> <li>· 응급진료 기관 위치 파악</li> <li>· 사고 응급조치/119 구급대 후송</li> </ul>	행사 주관부서 학장/학과(부)장 학장/학생대표 단과대학 교학팀 단과대학 교학팀 단과대학 교학팀

## ○ 캠퍼스 내 생활 관련

사고유형	조치(예방)	담당부서
시설물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li> <li>• 주기적인 교내순찰</li> <li>• 응급조치</li> <li>• 응급상황 시 119 구급대 후송</li> </ul>	총무관리처 / 단과대학 교학팀 총무관리처 / 단과대학 교학팀 단과대학 교학팀 / 보건진료소 단과대학 교학팀
상해(실족, 타박상, 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조치</li> <li>• 119 구급대 후송</li> </ul>	단과대학 교학팀 단과대학 교학팀
기타 사고(실종, 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학생처에 사고 현황 보고</li> <li>• 유관기관(관할경찰서) 공조</li> </ul>	단과대학 교학팀 학생복지팀 / 단과대학 교학팀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 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구분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	10	10	10	30	
학생안전사고 예방 교육	2	2	2	6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보험 가입	50	50	50	150	
기타	10	10	10	30	
<b>계</b>	<b>72</b>	<b>72</b>	<b>72</b>	<b>216</b>	

## 2 교육시설 안전사고[건축안전환경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건축안전환경팀	팀장	문**	062-230-6250	주관부서
2	건축안전환경팀	팀원	조**	062-230-6253	
3	총무팀	팀장	김**	062-230-6211	협조부서
4	자산관리팀	팀장	김**	062-230-6222	
5	기계전기팀	팀장	박**	062-230-7590	

## □ 위험요인

### 내용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1	0.2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25	0.05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b>계</b>	<b>0</b>	<b>0</b>	<b>0</b>	<b>0</b>	<b>0</b>

※ 학년도 기준 피해복구 신청금액 및 공제비 지급 완료 건에 대하여 기입

## □ 원인분석

### 내용

#### ○ 대학,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검토 결과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시설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점검·관리 관리강화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교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안전·유지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예정)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재난보험 가입 (재난, 화재, 가스 승강기 등)	93	94	120	307	
교육시설안전인증	12	12	12	36	
계	105	106	132	343	

### 3 연구실사고[기계전기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기계전기팀	박**	062-230-7590	주관부서
팀원	기계전기팀	유**	062-230-7595	
팀원	기계전기팀	이**	062-230-6154	
팀원	기계전기팀	유**	062-230-7599	

#### □ 위험요인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1	1	1	0.6	
재산피해(백만원)	0	0	161	0.6	0	32.3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1	1	0.2
	계	0	0	1	2	1	0.8

## □ 원인분석

### 내용

#### ○ 자체조사 결과

-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인한 연구실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필요
- 연구실 안전교육 재실시 및 안전점검 실시, 안전한 연구실 환경 구축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22	20	23	65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15	6	22	43	
교육·훈련 비용	10	10	10	3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3	22	25	70	
안전위생보호장비 구입	10	10	10	30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10	10	10	30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10	10	10	30	
<b>계</b>	<b>100</b>	<b>88</b>	<b>110</b>	<b>298</b>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내용

####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 감염병 예방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염병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감염병 대국민 행동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감염병 관련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감염병 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염병 비상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감염병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확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 ㉓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감염병 유행이 종료되어 복구 활동

- 평가 및 보완, 복구, 감시 활동 유지하고 수업결손 현황 보고 및 대책 수립(자체 휴업시)
-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참고 자료**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참고 자료**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li> </ul>
	이동 경로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li> </ul>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li> <li>▪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li> </ul>
	이동 경로 불명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li> </ul>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코로나19 대응 예산	0	0	0	0	
<b>계</b>	<b>0</b>	<b>0</b>	<b>0</b>	<b>0</b>	

## 4. 범죄

### 1] 일반범죄[총무팀]

####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팀	김**	062-230-6211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김**	062-230-6311	
팀장	학생복지팀	박**	062-230-6102	협조부서
팀장	대학원 및 단과대학	교학팀장		
상황실장	kt텔레캅	이**	062-230-7777	보안업체
상황팀장	kt텔레캅	이**	062-230-7777	

### □ 위험요인

####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2	11	3	6	10	6.4
피해자 수	0	1	0	6	2	1.8

□ 원인분석

**피해 범죄 발생 예방 대책 및 대응조치**

« [일반범죄]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교내 1일 3개 구역 120회)
- 일반범죄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주변에 거동수상자 / 주취자 발견 시 행동메뉴얼 >**

-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KT텔레캅 상황실 및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 범죄 발생 시 혼자 인 경우 주취자나 거동수상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KT텔레캅 및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 범죄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여 긴급히 도움 요청합니다.

**<위급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행동메뉴얼 >**

- 바로 종합상황실로 신고하며 신고가 어려울 시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화장실이 가까운 경우는 화장실 부스로 피신하여 비상벨을 누릅니다. 통합상황실에서 작동된 위치를 파악하고 보안요원이 바로 출동합니다.
- 종합상황실에서도 CCTV로 상황을 알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인지 시 바로 출동합니다.

**<주변의 위급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행동메뉴얼 >**

- “무슨 일 있어요” 등 큰소리로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알립니다

- 종합상황실에 전화나 비상벨로 상황을 알리고, 보안실 직원이 출동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합니다.
- 나중을 대비하여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 및 부서장이 관리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총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총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총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b>비전</b>	<b>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b>		
<b>목표</b>	<b>“원상회복”</b>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b>“실질적 참여”</b>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b>“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b>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b>추진 정책</b>	<b>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b>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b>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b>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b>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b>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b>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b>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b>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b>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일반 범죄 대비 경비 용역비 지출	1,549	1,461	1,496	4,506	
<b>계</b>	<b>1,549</b>	<b>1,461</b>	<b>1,496</b>	<b>4,506</b>	

## 2 성범죄[인권센터]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인권센터	김**	062-230-6785	주관부서
직원	인권센터	김**	062-230-7658	
직원	학생복지팀	조**	062-230-6104	협조부서
직원	원스톱학생상담센터	심**	062-230-6096	

## □ 위험요인

### 내용 ☞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교제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 촬영,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 유통·소비,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 **(스토킹 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접근 및 미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사칭, 도용 등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1	2	2	1	1	1.40
	성폭력	3	-	-	-	2	1.00
	계	4	2	2	1	3	2.40
피해자 수	성희롱	1	2	2	1	1	1.40
	성폭력	3	-	-	-	2	1.00
	계	4	2	2	1	3	2.40

## □ 원인분석

### 내용

#### ○ 인권센터 조사결과

-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교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피해 양상, 발생 경위, 사후 조치 및 처리 과정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최근 새로운 형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구성원 특성 및 발생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안내·홍보의 강화가 요구됨.

참고 자료 [공통자료] 원인분석 작성사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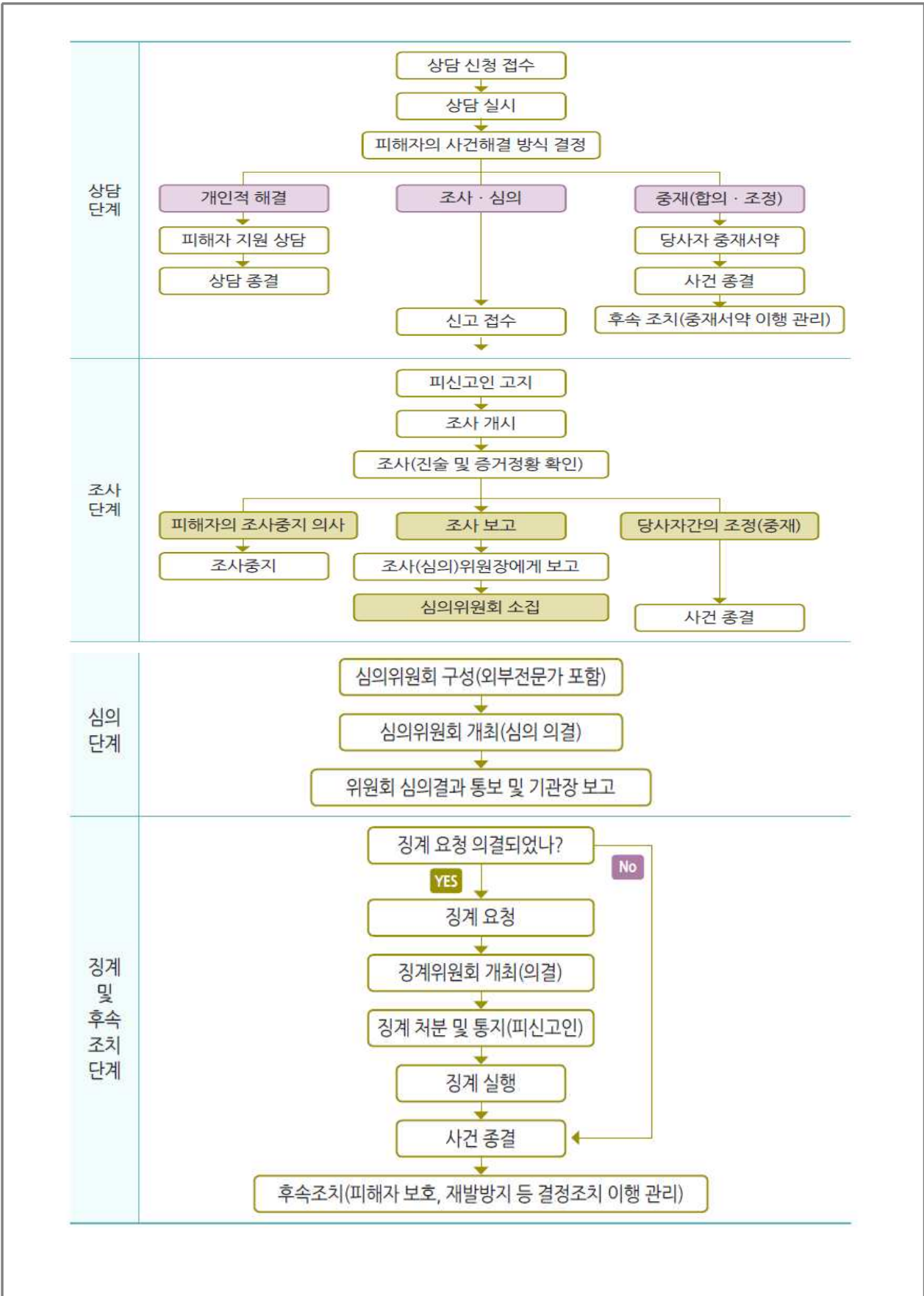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 관련 매뉴얼: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안내서(교육부, 2025)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서(여성가족부, 2025)

참고 자료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O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O
사건개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대학혁신지원사업	31.9	8.25	-	40.15	
교비(재학생 대상 인권·성평등 교육경비)	5	5	5	15	
교비(사건처리)	2.42	10.81	1.64	14.87	
<b>계</b>	<b>39.32</b>	<b>24.06</b>	<b>6.64</b>	<b>70.02</b>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1 산업재해[건축안전환경팀]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등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건축안전환경팀	팀장	문**	062-230-6250	주관부서
2	건축안전환경팀	팀원	조**	062-230-6253	
3	총무팀	팀장	김**	062-230-6211	협조부서
4	직원인사팀	팀장	지**	062-230-6210	

#### □ 위험요인

##### 내용 ☞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3	0	1	3	1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3	0	0	1
	<b>계</b>	<b>0</b>	<b>3</b>	<b>0</b>	<b>0</b>	<b>1</b>

## □ 원인분석

### 내용

####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의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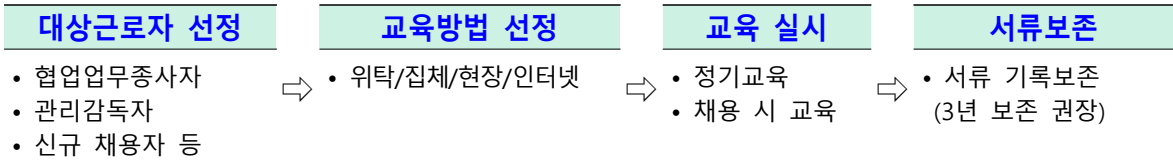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등 현업업무 종사자

####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서류보존**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보고(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부서장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b>안전보건관리책임자</b>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b>(중대재해) 산업재해 중</b>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업무 참조

주체	주요 업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b>사업주</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li> <li>■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li> <li>■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b>안전보건 관리책임자</b>  (총장)</div>	<p>&lt;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li> <li>■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li> <li>■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li> <li>■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b>안전 관리자</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b>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b>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b>보건 관리자</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b>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b>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b>관리감독자</b></div>	<p>&lt;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li> <li>■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li> <li>■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b>산업보건의</b>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li> <li>■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li> <li>■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b>산업안전 보건위원회</b>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div>	<p>&lt;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li> </ul>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예정)	합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6	3	2.9	11.9	
위험성평가	20	20	16	56	
위험성평가 후속조치	5	0	3.5	8.5	
<b>계</b>	<b>31</b>	<b>23</b>	<b>22.4</b>	<b>76.4</b>	

## 2 중대재해[건축안전환경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건축안전환경팀	팀장	문**	062-230-6250	주관부서
2	건축안전환경팀	팀원	조**	062-230-6253	
3	총무팀	팀장	김**	062-230-6211	협조부서
4	직원인사팀	팀장	지**	062-230-6210	

## □ 위험요인

내용 ☞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내용

※ 관련 매뉴얼·지침 참조

###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방문 의견 청취</li> <li>의견청취함 운영</li> <li>안전보건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의견 반영을 통해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li> </ul>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사고</li> <li>3일 이상 휴업재해</li> <li>중대재해(즉시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발생일로부터 <u>1개월 이내</u> 고용노동부 제출</li> <li>-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b>승인일</b> 기준 1개월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발방지계획서 작성</li> <li>수시위험성평가</li> <li>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li> </ul>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보고 시행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관련 매뉴얼 :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p>«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li> <li>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li> <li>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li> <li>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li> <li>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li> <li>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li> <li>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li> <li>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li> <li>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li> </ol> <p>«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li> <li>2. 인력, 예산 지원</li> <li>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li> </ol>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예정)	합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6	3	2.9	11.9	
위험성평가	20	20	16	56	
위험성평가 후속조치	5	0	3.5	8.5	
<b>계</b>	<b>31</b>	<b>23</b>	<b>22.4</b>	<b>76.4</b>	

## 6. 기타

### 1 비상사태[총무팀]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통합방위법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4 등

#####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5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팀	팀장	김**	062-230-6211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조**	062-230-6214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이**	062-230-6240	협력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양**	062-230-6241	

### □ 위험요인

#### 위험요인 분석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적 항공기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분쟁이나 국지전 발생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원인

#### ○ 원인분석 결과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총무계획 등에 따라 보안업무 교육 실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훈련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총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총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비상상황 발생 시 물자 구매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비상사태 대비 물자 구입	500	500	500	1,500	
<b>계</b>	<b>500</b>	<b>500</b>	<b>500</b>	<b>1,500</b>	

###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건축안전환경팀]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시설 안전공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학생복지팀]

#### 민법 & 학교안전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비고
2025	경영자배상책임보험	2025-03-21 2026-03-21	1,691 원 (단위:원)	18,669	31,577 (단위:천원)	

####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대인	200,000	1,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치료비	3,000	3,000	
	사망,후유장해	100,000	-	
신입생(OT) 담보	치료비	3,000	3,000	
	사망,후유장해	50,000	-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건축안전환경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m <sup>2</sup> )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교육시설 안전공제	2025. 1. 1. 2025.12.31.	67,357	449,052	93,753	-	-	7	17,015	자연재난 등 피해복구
2026	교육시설 안전공제	2026. 1. 1. 2026.12.31.	81,137	443,376	118,292	-	-	-	-	

####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건물	일반	964,297,260	90개동
배상책임 (특별약관)	교육시설 안전사고	대인(인당): 3,000,000 대인(사고당): 3,000,000 대물(사고당): 3,000,000	
	화재	대인(인당): 150,000 대물(사고당): 1,000,000	
	승강기 사고	대인(인당): 80,000 대물(사고당): 10,000	
부속물		6,225,138	17개
물품		63,593,359	1,392개
전기위험(특별담보)		해당 목적물 가입금액	

※ 기준년도 2026년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기계전기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연구실 안전공제	2024. 4. 19. 2025. 4. 18.	1.7	11,181	19,017	1	691	0	0	
2025	연구실 안전공제	2025. 4. 19. 2026. 4. 18.	1.1	11,216	12,782	1	1,144	0	0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인원에 제한 없이 1인당 해당 금액
장해급여	200,000		인원에 제한 없이 1인당 해당 금액
치료비	2,000,000		인원에 제한 없이 1인당 해당 금액
입원급여	50		인원에 제한 없이 1인당 해당 금액 (입원 1일당)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10,000		사고 시 중대한 화상 발생에 대한 지원금

##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원스톱학생상담센터]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 조직 현황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원스톱학생상담센터	센터장	강**	062-230-6323	주관부서
2	원스톱학생상담센터	연구교수	조**	062-230-6430	
3	원스톱학생상담센터	팀원	심**	062-230-6096	
4	원스톱학생상담센터	팀원	박**	062-230-6432	
5	원스톱학생상담센터	팀원	김**	062-230-7659	
6	원스톱학생상담센터	팀원	임**	062-230-6434	
7	원스톱학생상담센터	팀원	신**	062-230-6433	

### □ 지원 내용

구분	추진 내용
지역사회전문상담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남권 트라우마센터 연계 및 지역사회 권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의학과 사례등록 및 치료비 지원 연계</li> </ul>
마음안정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설의 화재, 지진, 풍수해,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재난 발생 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측에 요청)</li> </ul>
심리적 응급처치 (P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이후, 트라우마 위기사건 직후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인도적이고 지지적인 도움 제공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현장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 교육)</li> </ul>
교내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심리지원 :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 우울증상, 불안, 신체증상</li> <li>2차 심리지원 : 기간별 대상 전화상담 모니터링</li> <li>3차 심리지원 : 대상 위기도에 따른 개인상담 연계</li> </ul>

개입단계	1차 (재난발생 1주차)	2주차 (재난발생 1,2주차)	3차 (재난발생 3주차 이후)	4차 (재난발생 3주차 이후)
대상	사회재난 현장요원	상담의뢰 부서/학과	사회재난 현장요원 및 대리외상 경험자	대학 구성원 전원
지원내용	대상별 심리교육 및 초기 심리상담	교내 관계자 후속조치 회의	심리증상 모니터링 및 상담 진행, 의료기관 연계 및 심리평가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마음안심버스 캠페인 운영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규정	<p><b>원스톱학생상담센터 운영 세칙 제 5장(자살 및 위기학생을 위한 위기대응 위원회)</b></p> <p>① 센터는 본교 재학생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li> <li>2. 자살 등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센터의 전문적인 개입(치료, 상담, 학부모 연락처 고지)을 거절한 경우</li> <li>3. 기타 위기상황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li> </ol> <p>② 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장, 학생소속 대학(원)장, 취업학생처장, 총무관리처장, 지도교수, 학생복지팀장, 생활관운영팀장(생활관 학생의 경우), 상담자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그 밖의 위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한다.</p> <p>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센터에 상담사례가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살 및 위기상황의 조사</li> <li>2. 중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확정 및 시행</li> </ol>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트라우마센터(호남권 트라우마센터) : 재난 심리지원 통합 지원</li> <li>■ 정신건강복지센터 : 조현/우울 증상 지역사회 사례 등록</li> <li>■ 마인드링크 : 정신증 양성증상 조절 지속상담</li> <li>■ 정신건강의학과 : 종합심리평가 실시 및 소견 요청</li> <li>■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 은둔형외톨이 지역사회 사례등록</li> <li>■ 중독관리통합센터 : 중독 위험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li> </ul>
교내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재난 사고</li> <li>- 현장요원 심리교육 및 개인상담 운영</li> <li>- 재학생 소속학과 대상 트라우마/애도 심리교육</li> <li>- 전부서 심리교육 자료 배포, 간접노출자 트라우마/애도 심리교육 및 상담지원</li> </ul>

## 1. 재난안전훈련[건축안전환경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lt;담당부서 및 담당자&gt;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건축안전환경팀	팀장	문**	062-230-6250	주관부서
2	건축안전환경팀	팀원	조**	062-230-6253	
3	총무팀	팀장	김**	062-230-6211	협조부서
4	기계전기팀	팀장	박**	062-230-7950	
5	기계전기팀	팀원	박**	062-230-7593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훈련일	훈련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소방서 등	2025. 10. 30.	1시간 30분	40명 이상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소방안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발생 시 대피 훈련</li> <li>대학 캠퍼스 내외 화재사고 대비를 위한 대응훈련</li> </ul>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훈련일	훈련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학생 등	하반기	2시간	미정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연계 종합훈련(대형화재, 건축물 붕괴 등) 대응 훈련</li> <li>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li> </ul>

##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학생복지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복지팀	박**	062-230-6102	주관부서
팀원	학생복지팀	최**	062-230-6103	
팀원	학생복지팀	조**	062-230-6104	
팀원	학생복지팀	김**	062-230-6105	
팀장	건축안전환경팀	문**	062-230-6250	협조부서
팀원	건축안전환경팀	선**	062-230-6258	
팀장	학사운영팀	박**	062-230-6060	
팀원	산학연구인재교육센터	강**	062-230-7972	
팀원	총무팀	김**	062-230-6311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5. 3월중	1H	50 (학생대표)	
학생	2025. 5월중	1H	100	
학생	학기 중 사안별	각 1H 내외	2,00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과대학 학생 담당자 및 총학생회 운영위원 대상으로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교육</li> <li>학생자치기구 행사 및 단과대학 학생 집단행사 시행 전 참가자 대상 안전교육</li> </ul>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 (대피로 확보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li> <li>대규모 집단행사 시 안전 교육(화재.시설.전기.인사 사고)등</li> </ul>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6. 3월중	1H	50 (학생대표)	
학생	2026. 5월중	1H	100	
학생	학기 중 사안별	각 1H 내외	2,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과대학 학생 담당자 및 총학생회 운영위원 대상으로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교육</li> <li>▪ 학생자치기구 행사 및 단과대학 학생 집단행사 시행 전 참가자 대상 안전교육</li> </ul>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 (대피로 확보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li> <li>▪ 대규모 집단행사 시 안전 교육(화재.시설.전기.인사 사고)등</li> </ul>

###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축안전환경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건축안전환경팀	팀장	문**	062-230-6250	주관부서
2	건축안전환경팀	팀원	조**	062-230-6253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정기 안전보건교육	상반기	12시간	56	450
정기 안전보건교육	하반기	12시간	50	360
신규 채용자 교육	채용 시	8시간	17	340
관리감독자 교육	연 1회	16시간	4	64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정기 안전보건교육	▪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 현업업무종사자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시행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정기 안전보건교육	상·하반기	각 12시간	57	2,900
신규 채용자 교육	채용 시	8시간	미정	
관리감독자 교육	연 1회	16시간	4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정기 안전보건교육	▪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 현업업무종사자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시행

## 4. 연구실 안전교육[기계전기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기계전기팀	박**	062-230-7590	주관부서
팀원	기계전기팀	이**	062-230-6154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2025학년도 찾아가는 실험실 안전교육	8회	257	745,900
정기교육훈련	2025학년도 안전교육	사이버 안전교육으로 1년 365일 진행	4,816	8,800,000
집체식 안전교육	2025년도 집체식 안전교육	1회	94	4,593,05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 7개 단과대학 찾아가는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
정기교육훈련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안전교육 진행
집체식 안전교육	▪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 추가 진행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2026년도 찾아가는 실험실 안전교육	8회	400	2,000,000
정기교육훈련	2026년도 안전교육	사이버 안전교육으로 1년 365일 진행	5,000	8,800,000
특별안전교육훈련	집체식 안전교육	2회	200	5,0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 7개 단과대학 찾아가는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
정기교육훈련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안전교육 진행
집체식 안전교육	▪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 추가 진행



## 6. 성범죄 예방교육[인권센터]

### 성폭력방지법 등

####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인권센터	김**	062-230-6785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김**	062-230-7658	
팀원	장애학습지원센터	주**	062-230-6220	협조부서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5. 5. 12.~12. 31.	4시간	약 17,911명	6,000,000원
교직원	2025. 5. 12.~12. 31.	4시간	약 2,000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li> <li>▪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li> <li>▪ 학군단, 교원양성기관, 약학대학 등 실무실습생 대상 폭력예방교육</li> <li>▪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li> <li>▪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기타 성범죄 예방교육</li> </ul>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교직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li> <li>▪ 고위직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li> </ul>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4대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연중 상시	약 20,000명	6,000,000원
교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연중 상시	약 2,000명	6,0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li> <li>▪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li> <li>▪ 학군단, 교원양성기관, 약학대학 등 실무실습생 대상 폭력예방교육</li> <li>▪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li> <li>▪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기타 성범죄 예방교육</li> </ul>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교직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li> <li>▪ 고위직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li> </ul>

## 7. 비상대비 교육·훈련[총무팀]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팀	팀장	김**	062-230-6211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조**	062-230-6214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이**	062-230-6240	협력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양**	062-230-6241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전체 구성원	2025. 8. 19. ~ 20.	8h	100여 명	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비 업무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전체 구성원	비상대비 훈련	1	100여 명	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비 업무

###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내용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및 안전점검을 실시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

###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 재난[건축안전환경팀]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기관 전화번호	비 고
교육부	044-205-6293	학교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	044-205-5314	복구지원과
산림청	042-481-4065	산사태방지과
광주시청	062-613-4960	재난대응과
동구청	062-608-2800	주민안전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62-464-5902	재난신고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연락처	비 고
조선대학교 상황실	062-230-7777	

#### □ 안전사고[학생복지팀, 건축안전환경팀]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비상연락망	비 고
동구보건소	062-608-3261	보건행정과
광주 동부소방서 대인	062-606-4203	119안전센터
동부경찰서	182	
조선대학교병원	062-220-5555	응급실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연락처	비 고
조선대학교 상황실	062-230-7777	

### □ 감염병 확산[보건팀]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비상연락망	비 고
광주동구보건소	062-608-3311,3421	
조선대학교병원	062-220-3739	
광주광역시청	062-613-1170	공공보건의료과
교육부 상황실	044-203-6814	학생건강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잔화번호	비 고
조선대학교 보건진료소	062-230-6080~4	
조선대학교 상황실	062-230-7777	

### □ 범죄[총무팀, 인권센터]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비상연락망	비 고
광주 동부경찰서	182	성범죄
법무부 스마일센터	062-417-1295	
광주해바라기센터	062-225-3117	
교육부	044-205-6293	학교안전총괄과
광주지방노동청	062-975-6348	중대재해관리과
광주지방노동청	062-975-6394	산재예방지도과
동부소방서	062-613-8408	
동부경찰서	182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연락처	비 고
조선대학교 상황실	062-230-7777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건축안전환경팀]**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기관 전화번호	비 고
교육부	044-205-6293	학교안전총괄과
광주지방노동청	062-975-6348	중대재해관리과
광주지방노동청	062-975-6394	산재예방지도과
동부소방서	062-613-8408	
동부경찰서	182	

2) **상황실 운영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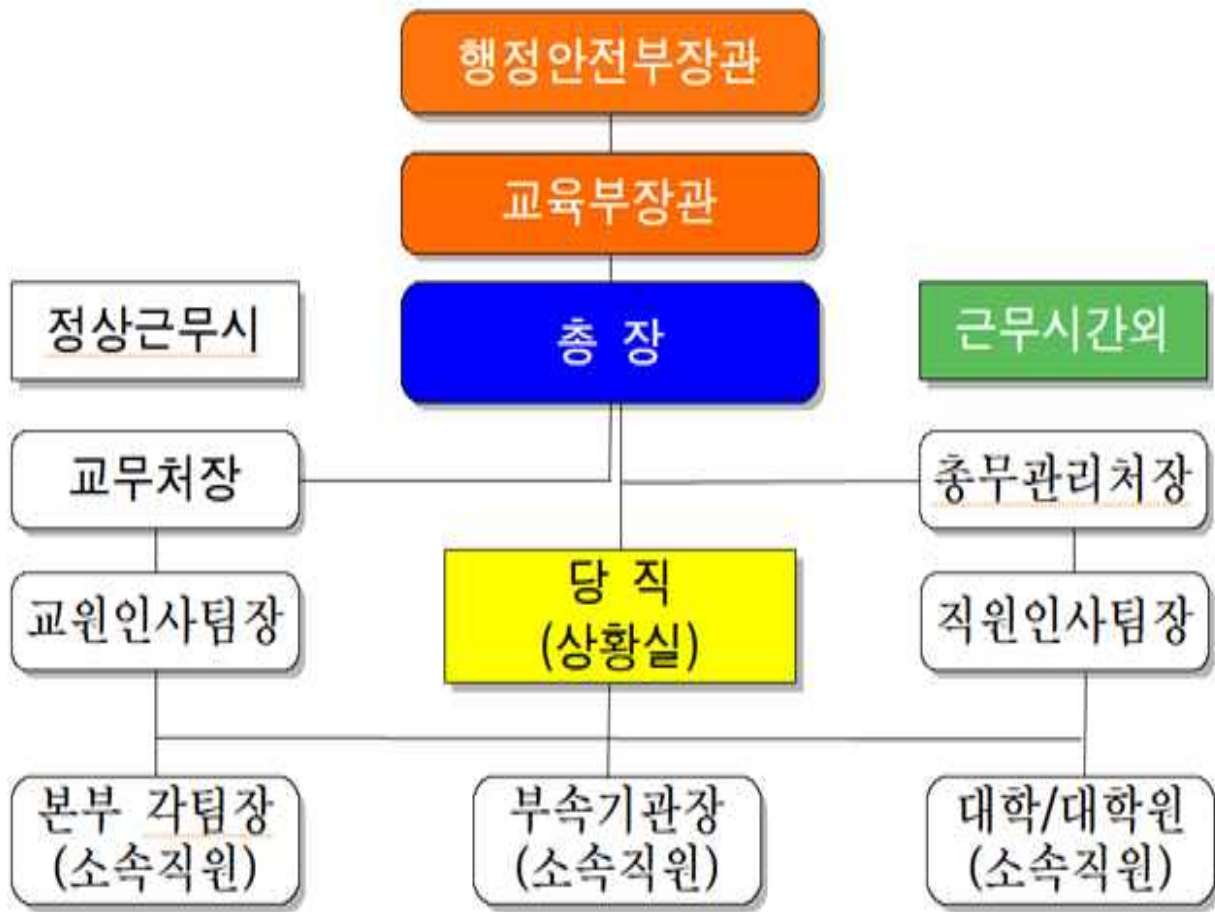
기 관 명	연락처	비 고
조선대학교 상황실	062-230-7777	

□ **비상사태[총무팀]**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비상연락망	비 고
총무팀	062-230-6211	팀장
	062-230-6214	팀원
예비군연대	062-230-6240	연대장
	062-230-6241	참모
육군 00사단		사단사령부
00사단 000여단 0대대		여하부대
병무청	062-230-4264	예비군
광주광역시 동구청	062-608-3044	주민안전담당관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된 비상조직본부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구 분	예비군연대		지원 가용부대 (기동부대)
	예비군	기 타	
부 대	학생 보류자(0개대대), 교직원(0개중대)	용역업체 CCTV	제00보병사단 기동전력 (가용시), 000여단 0대대(동구기동대, 00중대), 동부경찰서 기동대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 재난	팀장	건축안전환경팀	문**	062-230-6250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환경팀	조**	062-230-6253		
		팀장	총무팀	김**	062-230-6211		
		팀장	자산관리팀	김**	062-230-6222		협조부서
		팀장	기계전기팀	박**	062-230-7590		
	② 사회 재난	팀장	건축안전환경팀	문**	062-230-6250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환경팀	조**	062-230-6253		
		팀장	총무팀	김**	062-230-6211		
		팀장	자산관리팀	김**	062-230-6222		협조부서
		팀장	기계전기팀	박**	062-230-7590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팀장	학생복지팀	박**	062-230-6102	주관부서	
		팀원	학생복지팀	최**	062-230-6103		
		팀원	학생복지팀	조**	062-230-6104		
		팀원	학생복지팀	김**	062-230-6105		
		팀장	건축안전환경팀	문**	062-230-6250		협조부서
		팀원	건축안전환경팀	선**	062-230-6258		
		팀장	학사운영팀	박**	062-230-6060		
		팀원	산학연구인재교육센터	강**	062-230-7972		
		팀원	총무팀	김**	062-230-6311		
	② 교육 시설 안전 사고	팀장	건축안전환경팀	문**	062-230-6250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환경팀	조**	062-230-6253		
		팀장	총무팀	김**	062-230-6211		
		팀장	자산관리팀	김**	062-230-6222		협조부서
		팀장	기계전기팀	박**	062-230-7590		
	③ 연구실 사고	팀장	기계전기팀	박**	062-230-7590	주관부서	
		팀원	기계전기팀	유**	062-230-7595		
		팀원	기계전기팀	이**	062-230-6154		
팀원		기계전기팀	유**	062-230-7599			
3. 감염병 확산	① 감염병 재난	소장	보건진료소	류**	062-230-6483	주관부서	
		팀장	보건진료소	박**	062-230-6080		
		팀원	보건진료소	나**	062-230-6079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4. 범죄	① 일반 범죄	팀장	총무팀	김**	062-230-6211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김**	062-230-6311	
		팀장	학생복지팀	박**	062-230-6102	협조부서
	② 성범죄	센터장	인권센터	김**	062-230-6785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김**	062-230-7658	
		팀원	학생복지팀	조**	062-230-6104	협조부서
		팀원	원스톱학생상담센터	심**	062-230-609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 재해	팀장	건축안전환경팀	문**	062-230-6250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환경팀	조**	062-230-6253	
		팀장	총무팀	김**	062-230-6211	협조부서
		팀장	직원인사팀	지**	062-230-6210	
	② 중대 재해	팀장	건축안전환경팀	문**	062-230-6250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환경팀	조**	062-230-6253	
		팀장	총무팀	김**	062-230-6211	협조부서
		팀장	직원인사팀	지**	062-230-6210	
6. 기타	① 비상 사태	팀장	총무팀	김**	062-230-6211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조**	062-230-6214	
		팀장	예비군연대	이**	062-230-6240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양**	062-230-6241	

## 붙임2

##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0	3	0	2	6	1.50	
		재산피해(백만원)	0	58	0	20	18.8	29.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1	0	1	2	0	0.50	
		재산피해(백만원)	49	0	322	60	0	24.5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7	13	20	15	4	12	
		재산피해(백만원)	7.1	9.5	17.3	14.5	4.8	10.6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7	13	20	15	25	16
			계	7	13	20	15	25	16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0	0	0	0	1	0.0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25	0.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0	0	1	1	1	0.6	
		재산피해(백만원)	0	0	161	0.6	0	32.3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1	1	0.2
			계	0	0	1	2	1	0.8
3. 감염병 확산	① 감염병 재난	감염자 수	7	168	2,095	207	0	619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2	11	3	6	10	6.4	
		피해자 수	0	1	0	6	2	1.8	
	② 성범죄	발생건 수	4	2	2	1	3	2.4	
		피해자 수	4	2	2	1	3	2.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3	0	1	3	1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3	0	0	0	1
			계	0	3	0	0	0	1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붙임3

##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1. 재난	① 자연 재난	재난보험 가입 (재난, 화재, 가스 등)	93	94	120	93	
		시설물 안전관리비	18	0	34.4	18	
		<b>계</b>	<b>93</b>	<b>94</b>	<b>120</b>	<b>93</b>	
	② 사회 재난	재난보험 가입 (재난, 화재, 가스 등)	93	94	120	93	
		시설물 안전관리비	18	0	34.4	18	
		<b>계</b>	<b>93</b>	<b>94</b>	<b>120</b>	<b>93</b>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	10	10	10	30	
		학생안전사고 예방 교육	2	2	2	6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가입	50	50	50	150	
		기타	10	10	10	30	
		<b>계</b>	<b>72</b>	<b>72</b>	<b>72</b>	<b>216</b>	
	② 교육 시설 안전 사고	재난보험 가입 (재난, 화재, 가스 등)	93	94	120	93	
		교육시설안전인증	12	12	12	12	
		<b>계</b>	<b>111</b>	<b>94</b>	<b>154.4</b>	<b>111</b>	
	③ 연구실 안전 사고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20	15	33	68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6	19	30	55	
		교육·훈련 비용	10	10	16	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2	18	20	60	
		안전위생보호장비 구입	10	10	15	35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10	10	15	35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10	10	15	35	
<b>계</b>	<b>88</b>	<b>110</b>	<b>144</b>	<b>324</b>			
3. 감염병 확산	① 감염병 재난	코로나19 대응 예산	0	0	0	0	
		<b>계</b>	<b>0</b>	<b>0</b>	<b>0</b>	<b>0</b>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4. 범죄	① 일반 범죄	일반 범죄 대비 경비 용역비 지출	1,549	1,461	1,496	4,506	
		<b>계</b>	<b>1,549</b>	<b>1,461</b>	<b>1,496</b>	<b>4,506</b>	
	② 성범죄	대학혁신지원사업	31.9	8.25	-	40.15	
		교비(재학생 대상교육 경비)	5	5	5	15	
		교비(사건 처리)	2.42	10.81	1.64	14.87	
		<b>계</b>	<b>39.32</b>	<b>24.06</b>	<b>6.64</b>	<b>70.02</b>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6	3	2.9	6	
		위험성평가	20	20	16	20	
		위험성평가 후속조치	5	0	3.5	5	
		<b>계</b>	<b>204</b>	<b>188</b>	<b>274.4</b>	<b>204</b>	
	② 중대재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6	3	2.9	6	
		위험성평가	20	20	16	20	
		위험성평가 후속조치	5	0	3.5	5	
		<b>계</b>	<b>204</b>	<b>188</b>	<b>274.4</b>	<b>204</b>	
6. 기타	① 비상사태	비상사태 대비 물자 구입	500	500	500	1,500	
		<b>계</b>	<b>500</b>	<b>500</b>	<b>500</b>	<b>1,500</b>	